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0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이강일 · 민병덕 · 조계원

허성무 • 양부남 • 강준현

김남희 · 김우영 · 임미애

김 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차례의 변천을 거쳐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 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겨 업무처리 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옴.

따라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

을 추가하여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할 필요 성이 있음. 손해사정사는 여타의 자격에 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 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도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주요내용

- 가. 무분별한 하위 법령의 자격 구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에 손 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
- 나.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6조제2항).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생 략)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		
	<u>으로 한다</u>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③ 제1항 및 제2항		
등록, 시험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